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허위조작정보 및 딥페이크 정보 유통방지〉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27호)

2024.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허위조작정보 정의(안 제2조제1항제14호 신설)	2
2. 허위조작정보 및 딥페이크 성범죄 정보의 유통 금지(안 제44조제1항) ..	5
3. 딥페이크 정보에 대한 표시의무 및 삭제의무(안 제44조의11 신설 등) ..	11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인철의원 등 21인

나. 발 의 일 : 2024. 9. 4.

다. 회 부 일 : 2024. 9.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함)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 등이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허위조작정보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범위에 허위조작정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허위조작정보 정의(안 제2조제1항제14호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신설함.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① ----- -----. 1. ~ 13. (현행과 같음) 14. “허위조작정보”란 <u>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를 말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로 정의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 유통의 경우 그 신속성, 확장성과 익명성,

비대면성에 따라 허위 정보의 유통에 대한 반론권 행사가 용이하지 않고, 군중심리에 따른 비이성적 집단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측면이 있음(2016헌마275등).

- 그럼에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 현행 법체계는 언론사의 허위보도만을 중재 및 피해구제의 대상으로 하거나, 명예훼손 등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 및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용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의견과 같이 이견이 있으므로, 법 개정 앞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신설하고 그 유통을 방지하려는 동법 개정안 2건¹⁾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이 사회혼란 야기 또는 경제적 이익 등 목적을 한정하지 않고 조작된 정보를 모두 허위조작정보로

1) 제2200352호(김장겸의원 대표발의), 제2203370호(김미애의원 대표발의)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고의적으로 생성된 허위정보뿐만 아니라 정보게재자가 사실로 믿을 근거가 충분했던 정보, 경과실로 오인한 정보 등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어떠한 허위정보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하는 고의가 개입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입법취지의 달성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2. 허위조작정보 및 딥페이크 성범죄 정보의 유통 금지(안 제44조제1항)

가. 개정안 요지

○ 다음의 정보를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44조 제1항).

- 허위조작정보(제2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²⁾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제3호)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u>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u> 정보를 정보통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 <u>다음 각 호의</u> ----- -----.

2)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개정안
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신설> <신설>	1. <u>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u> 2. <u>허위조작정보</u> 3. 「 <u>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u> 」 제14조의2에 따른 <u>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은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권리침해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동조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해당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제44조 제1항에 따른 유통금지대상 정보에 허위조작 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허위영상물

등(이하 “딥페이크 성범죄 정보”)을 포함함으로써 해당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선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현행 「정보통신망법」이 권리침해 정보와 불법정보의 규제체계를 달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권리 침해정보보다는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해 보임.
-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제44조에서 권리침해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에서 권리침해정보로 권리가 침해된 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임시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³⁾.

한편 제44조의7은 음란정보, 사행성 정보 등 법률에 위반되는 정보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3)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후단생략)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4)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내용규제 체계>

구분	권리침해정보(제44조)	불법정보(제44조의7)
의미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음란정보, 사행성 정보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규제방법	(제44조의2) 권리침해당사자의 삭제 등 요청 (제44조의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의 임시조치	(제44조의7 제2항·제3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 허위조작정보는 타인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안전, 사회의 신뢰 유지 등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유통을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관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44조의 권리침해정보 체계에 포함시키기보다는 제44조의7의 불법정보에 포함하는 것이 현행 법체계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정보**의 경우,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으로도 이미 유통이 금지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는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⁵⁾.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성범죄 정보를 유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딥페이크 성범죄 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불법정보에 포함됨.
-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정보의 유통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안 제44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할 실익이 낮을 것으로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 및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허위영상물에 따른 권리침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5)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제1항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선언적 조항으로서 허위 조작정보나 허위영상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현행법 상으로도 동 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더라도 허위조작정보나 허위영상물이라는 사실만으로 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허위영상물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불법정보에 해당하여 선언적 조항인 제44조 제1항에 추가할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는 입장임.

3. 딥페이크 정보에 대한 표시의무 및 삭제의무(안 제44조의11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누구든지 딥페이크 정보(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를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함(안 제44조의11 제1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전자적 표시를 하지 아니한 딥페이크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여야 함(제2항).
- 딥페이크 정보에 전자적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6조제3항제4호의3).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4조의11(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의 표시)</u> <u>① 누구든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체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u>

현행	개정안
제76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의2. (생략) <u><신설></u>	<u>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한다.</u> ② <u>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전자적 표시를 하지 아니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u> ③ <u>제1항에 따른 전자적 표시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u>제4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에 전자적</u>

현행	개정안
4의3. · 4의4. (생략)	<u>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u> 4의4. · 4의5. (현행 제4호의3 및 제4호의4와 같음)
5. ~ 25. (생략)	5. ~ 25.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된 합성물,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⁶⁾ 정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관련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행정부는 2023년 10월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통해 정부가 검증된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인증 및 워터마크 지침을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구글, 오픈AI 등 7개 기업⁷⁾은 인공지능 기술로 작성한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넣는 등 이용자 안전 조치를 취하기로 정부와 합의하였음⁸⁾.
- 또한 유럽연합은 2024년 3월 딥페이크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생성 · 조작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배포자가 해당 콘텐츠가 딥페이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인공

6) 딥페이크는 ‘딥(deep)러닝’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합성 미디어 기술을 통칭함

7)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픈AI, 인플렉션, 앤스로픽

8) 이승환, ‘생성AI 확산과 저작권 이슈의 부상’, 국회미래연구원, 23-15호.

지능법(AI Act)을 통과시킨 바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⁹⁾,

인공지능 생성물 전반에 대한 표시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없음.

- 이에 개정안은 딥페이크 정보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표시의무를 위반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딥페이크 정보를 이용한 성범죄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9)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 딥페이크 정보 표시의무 관련

- 첫째, 표시의무자의 범위를 실제 의무 이행이 가능한 자로 한정하고, 실질적인 이행이 가능하도록 표시수단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은 ‘누구든지’ 딥페이크 정보를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딥페이크 정보임을 ‘전자적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딥페이크 정보의 경우 사실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직접 정보를 생성한 자가 아닌 단순히 정보통신망에 게재되어 있는 정보를 유통하는 자의 경우 해당 정보가 딥페이크 정보인지 판별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의무 이행이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와 같은 ‘전자적 표시’의 경우 인공지능 개발·이용 사업자가 표시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로서는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인공지능 사업자의 표시수단 제공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려는 인공지능 관련 제정법률안¹⁰⁾들이 현재 우리 위

10)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0053호, 안철수의원 대표발의) 등

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병행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표시의무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에 대하여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그런데 방송·광고 등 콘텐츠 제작에 이르기까지 실생활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그 활용 정도 또한 단순 보정부터 실물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사진·영상등의 구현까지 다양한 만큼, 모든 딥페이크 정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표시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가령 개정안에 따르면 촬영 영상 일부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단순 보정한 경우까지도 표시의무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콘텐츠의 일부로서 당연히 딥페이크 정보임을 알 수 있는 경우까지도 표시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 표시의무가 이용자의 몰입을 저해할 우려 등의 부작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따라서 딥페이크 정보가 사실로 오인됨에 따른 사회적 영향, 부작용이 우려되는 분야 등을 고려하여 표시의무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삭제의무 관련

- 첫째,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딥페이크 정보에 대한 삭제의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어 보임.
- 딥페이크 정보의 경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업자가 딥페이크 정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의 삭제의무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① 권리침해정보의 경우 권리침해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삭제·반박내용의 게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임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¹¹⁾,

11)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

② 불법정보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처리 거부·정지·제한 등을 명령한 경우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¹²⁾ 사업자의 판단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사업자 책무 강화에 따른 관련 산업의 위축 가능성과 함께 이번 딥페이크 문제가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플랫폼 기업의 책임이 큼에도 국내와 해외 사업자 간 실질적인 차별규제 문제로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딥페이크 정보 삭제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보임.
- 딥페이크 정보 중에는 허위사실의 유포 등 악의적인 목적이 없거나, 타인의 명예 등 구체적인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정보도 있음에도,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정보에 대한 판별이

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12)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자가 삭제의무 이행을 위해 딥페이크 정보로 의심되는 정보를 과도하게 삭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보임.

○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등 딥페이크의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동법 개정안 9건¹³⁾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① 표시의무 정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뿐만 아니라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상의 글·문자에도 표시 의무를 확대하고, 활용 범위가 경미하거나 범죄예방을 위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 범위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예외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② 표시의무자와 관련하여, 온라인상 게재된 정보를 단순 채유통하는 자는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것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표시의무자를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던 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유통하는 단계가 아닌 제작·편집 단계에서 전자적 표시를 해야 하는 자는 인공지능 기술

13) 제2200713호(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제2203240호(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제2203253호(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제2203275호(우재준의원 대표발의), 제2203323호(김장겸의원 대표발의), 제2203335호(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제2203479호(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제2203542호(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제2203592호(김현정의원 대표발의)

개발자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③ 위반정보에 대한 삭제의무와 관련하여, 불법성이 없는 정보까지 일괄 삭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권 표시’하거나 ‘이용정지 또는 수익제한’하도록 하는 등 삭제 외의 조치도 고려해 보아야 하고,

④ 과태료와 관련하여, 이용자보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알지 못하여 미표시한 자에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표시의무의 경우 이용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모든 표시의무 미이행 정보가 유해한 것은 아니므로 일률적으로 삭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공지능 기술 여부를 인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며, 표시의 구체적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고,

표시방법을 지키지 않은 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표시의무 및 위반 정보의 삭제의무로 인해 인공지능산업 및 콘텐츠산업 전반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